

공정회 미 토로회 자료집

형사절차상 장애인권 침해사례와 형소법개정방향

일시 : 2004년 3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화보 공동행동

노들장애인아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 (가나다순)

형사절차상 장애인권 침해사례와 형소법개정방향

일시 : 2004년 3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 (가나다순)

진행 순서

사회: 김정열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소장)

1. 여는말

주신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2. 형사절차상 장애 인권 침해 사례

유병주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소장)

이정자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김주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교육팀장)

3. 주제발제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고영신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소속)

4. 지정토론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폭력상담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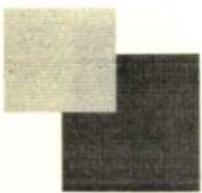
박숙경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

법무부

5. 자유토론



자료집 내리비치



1. 형사절차상 장애인권 침해사례..... p.5
 - 1-1.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의 형사절차상 장애인권 침해사례
 - 1-2. 청각장애인 사례의 특성
 - 1-3. 뇌성마비장애인의 형사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 몇가지뇌성마비
2. 주제 빨제문..... p.17
 - 형사절차상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3. 토론 빨제문..... p.24
 - 3-1. 피의자신문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구조
 - 3-2. 수선, 장애유형별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 3-3. 법개정과 함께 실태파악, 전담기구 구성, 장애인권교육 실시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별첨>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장애인의 형사절차상 인권 침해사례

1. 정신지체 및 빨달장애인의 형사절차상
장애인권 침해사례..... p.7
유병주(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소장)
2. 청각장애인 사례의 특성..... p.16
이정자(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3. 노성마비장애인의 형사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 몇가지노성마비..... p.12
김주현(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교육팀장)



장애인의 형사절차상 인권 침해사례

장애인의 형사절차상 인권 침해사례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의 형사절차상 장애인권 침해사례

발제자: 유병주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소장)

1. 인권침해 사례

1) 목포시 장애우 부부 화재 사망 사건

2004년 2월 2일 밤 10시경 김인수(남, 67세, 청각장애 4급)씨 집(전남 목포시 연산동)에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본인과 부인(57세, 정신지체 2급)이 숨지고 아들(23세, 정신지체 3급)은 간신히 불길을 피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화재의 원인은 지난 4개월 동안 전기세가 밀리자 한전에서 전기를 끊었고 촛불을 키고 생활하다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 따르면 화재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김인수씨 가족을 돌보아주고 있었다는 고물상 주인 전 모씨(남, 65세)가 가족의 돈(부인 교통사고 보상금 및 고물수 거비 등 수 천만 원 상당)을 지속적으로 착복함으로 전기값을 낼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김인수씨 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월 65만원)로 고물을 모으며 어렵지만 열심히 생활하였다. 그러나 이들 가족은 전원이 장애인임을 알고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착취를 해온 친지로부터 돈뿐 아니라 가족 목숨까지 빼앗겼다.

(출처: 함께걸음 2004. 3, 46-510)

2) 17년간 장애인 갈취한 50대 부부 사건

2004년 3월 14일 정신지체인의 후견인을 자처하여 17년 동안 대가도 없이 일을 시키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홍 모(57세)씨와 그의 아내 고 모(52세)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88년 5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정신지체인 3급인 정 모(37세, 여)씨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며 일체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98년 9월 정씨를 대전시 서구 괴정동 김 모(50세)씨가 운영하는 수퍼마켓에 취직시킨 뒤 매달 60만원 월급을 받아쓰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업소 3곳에 취직시켜 60여 차례에 걸쳐 월급 3천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또한 장애인이 세금을 적게 내는 점을 악용해 정씨 명의로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구입해사용하고 아파트 분양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있는데도 정씨를 이용해 왔으며 옷도 침아들이 입던 옷만 입히고 식사도 라면만 주는 등 전혀 돌봐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04년 3월 14일자)

3) 길 잃은 정신지체인을 20개월간 앵벌이로 착취한 사건

2004년 3월 4일 파주시 경찰서는 판단능력이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선천적 정신지체 및 언어장애(3급)를 가진 최 모(42세, 여)를 1년 8개월 동안 비참한 앵벌이를 시킨 인간 찰거머리 박 모(44세, 무직)씨와 그의 내연의 처(49세)를 상습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들은 경기도 군포시 집 앞에서 길을 잃고 혼매던 최씨에게 접근하여 “밥을 먹여주겠다”며 파주시

로 끌고가 월세방에 감금한 뒤 매일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 일대 유흥가를 돌며 손님들을 대상으로 구걸 행위를 시켰다.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죄씨의 목에 장애인카드를 걸어 껌과 쿠콜렛 등을 팔게 했고 하루 수입금 30만~40만원을 고스란히 챙겨갔다. 이렇게 이들이 갈취한 돈은 1억8000여만 원에 달하며, 또한 죄씨를 파주시에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한 뒤 죄씨의 통장을 개설해 매월 나오는 20만 1000원의 생계보호지원금도 빼앗았다. 이들은 비장애인도 힘들 정도로 매일 오전 3시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죄씨에게 앵벌이를 시켰으며 “어쩌다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마구 때려 1년에 고작 사흘 정도 쉬었다”고 죄씨는 경찰에게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3월 4일자)

4) 정신지체인 성폭력 사건 I

1995년 12월 22일 2급 정신지체를 가진 손 모(당시 29세, 여)씨는 직장(염창동 소재의 소규모 출판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평소에 자주 하던대로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근처(가양동 아파트 단지) 포장마차에서 떡볶기를 사먹었다. 돌아오던 중, 안면불식의 남자 1명이 다가와 “왜 집에 가지 않느냐”고 말을시키며 잡아 근처 <정든 모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저녁 8시경에 노래방에 들어가 4명의 남자들과 노래를 부르던 손씨는 도중에 여자 1명이 다시 합세해 4시간동안 노래를 부르고 놀았다. 새벽 0시가 조금 지나 남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돌아갔고 손씨는 그 미명의 남자에게 이끌려 택시를 타고 상호불명의 여관에 들어갔다. 그 남자는 손씨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주고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했으며, 손씨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밤새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날 오전 8시경 그 남자는 손씨를 그룹홈 근처까지 데려다주며 “다음부터는 다시 너를 만나지 않을테니 선생님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시켰다.

그러나 그룹홈 교사(사회복지사)인 심 모씨는 도중에 합세한 여자가 상시 손씨가 떡볶이를 사먹던 포장마차주인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도움을 청했지만 조사에 성의를 보이지 않자 자력(교사의 가족일원의 도움)으로 범인에 관한 많은 정보를 조사하여 범인 신변을 확보, 경찰에 대리인 자격으로 범인들을 잡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경찰은 범인의 자백을 받았으나 손씨 본인 의사에 의한 <화간>으로 보고 결국, 손씨 아버지는 범인과 약간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4) 정신지체인 성폭력 사건 II

정신지체 3급인 오 모(여)씨는 19세의 외모가 준수하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다. 어머니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언니들의 보호 하에 있는 오씨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중계동 소재)에서 생활하면서 직업훈련(북부장애인복지관)을 받고 있었다. 2003년 1월 초 하루간 외박을 하고 돌아왔으며 그룹홈 교사는 상계동 전철역 근처에서 어느 남자와 같이 밤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두주 정도 지나서 오씨는 같은 방 동료와 함께 다시 그룹홈을 나가 여러 날 후에 돌아왔으며 지난번에 만났던 같은 남자가 짜장면을 사주고 여관으로 데려갔음을 확인한 언니와 그룹홈 교사는 그 여관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찰은 교사와 언니를 떼어놓고 오씨와 단독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보아도 장애인임을 모르겠다며 소위 <화간>이므로 일본에 계신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걱정을 끼치지 말고 조용히 타일러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라고 설득하였다. 며칠 후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떠돌이 남자로 범인의 신상파악이 어렵다고 하며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렵다고 하였다.

5) 직장에서의 폭행사건

정신지체2급의 성 모씨(36세)는 자폐성향으로 인해 직장생활이 어려워 여러 번 직장을 옮긴 후 현재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 책임감이 강한 성씨는 업무상 외부 심부름을 자주하면서 직장을 다시 잊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다. 2004년 1월 31일 성씨는 사장님으로부터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옆에 놓여있던 가시렌지로 심하게 맞아 상처가 크고 많이 부었지만 간단한 치료조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작업반장이 연고만 발라주고 다시 외부 심부름을 나갔다. 2월 1일 그룹홈교사가 성씨의 상처를 보고 장애인복지관직업관리담당직원과 부모에게 알렸다. 성씨의 부모님은 사장을 상대로 노동부에 고발을 하고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사장은 부모에게 200만원 위자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성사시켰다.

이상의 사례들을 볼 때 정신지체인들은 장애등급을 불문하고 이해판단능력이 떨어져 자신에게 친절하고 작은 물질적인 호의(음식, 돈 등)에 이용당하기 쉽다. 이러한 정신지체인들의 행동성향을 이용해 금전적으로 갈취하거나 성폭행, 폭력 등이 난무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형사상의 절차를 원하여도 경찰은 자녀의 장애로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해오고 피해의식이 팽만해진 부모에게 빠른 해결을 설득하고 있다. 특히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지체인의 경우 피해사실을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교사(사회복지사)는 피해자의 법적인 후견인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지당하고 있어 피해를 당한 정신지체인의 권리와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피해충격으로 자존감이 낮아져 더욱 수동적이거나 심하게는 이상 행동양상(성적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을 보여 사회적응(직장 등)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의견제시

이상의 결과를 미루어 본인은 형사소송법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문화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조인의 그 의무화와 범주의 확대

보조인 제도를 신고제가 아닌 의무화되어 부모 외에도 피해자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관련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2)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모든 장애인 관련 특별조례를 넣을 수가 없으므로 장애인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개별적으로 개입하도록 함으로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해결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청각장애인 사례의 특성

발 제 자: 이정자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1.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형사소송법과의 연계성

□ 법률 상의 존재: 변호인, 통역인을 필수로 하는 대상

- 제33조(국선변호인)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기타 빈곤 등
- 형법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減輕) 한다.

-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할 수 있다.

□ 실제의 연관성

- 신분확인: 장애인수첩, 현행의 복지카드
(수사초기 단계에서 청각언어장애인임을 확인케하는 제도적, 사회적 장치 발전)
예전은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묵비권행사내지 반항하는 행동으로 誤認
경찰조사과정에서부터 구타와 무시의 대상

- 의사소통의 문제 수화통역의 문제

- 절차: 수화통역 개입의 사례 중심(1년~2,3년 소요),
지속된 수화통역사의 개입 곤란한 현실적 시스템
- 과정: 감경의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상황이 청인과 동등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판단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보완조치)

- 행동 및 사회적 특성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개인 단독인 경우와 공동 관련성(농인 복수, 청인과의 연관성)
수화언어사용으로 기록, 숫자개념 미약, 수화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 대한 배타심
수화사용자 사회의 공개성과 친밀도 높아 익명성 보장 어려움
(비밀유지가 어렵고 이에 따라 사례발굴, 공개의 어려움)
- 주요 관련부분: 폭력, 날치기, 교통사고(가해자, 피해자)

□ 법 앞의 평등권

- 관대한 처분(사회적 배려?)
- 억울한 누명

2.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

- 법규상의 문제(개정, 보완)
- 현장시행상의 문제점: '인권수사보호지침' 등과 같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 관련사건을 특별히 다루도록 지침을 하달하고 수시로 체크하게 하는 등
(진술개시 동시 수화통역자를 의무적으로 부르도록 안전조치)

- 수화통역사의 활용(규칙)
 - 수화통역사의 법률적 전문성강화: 수화통역사자격유지 보수교육 시 년3시간이내 수화통역사는 청각장애인인 가해자인 경우 가해자 취급을 받는 경향 있음에 대한 보완조치

3. 사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29세, 남, M
장소: 술집, 술취한 여종업원과의 시비
진행: 초등수사과정에서 술집 측의 일방적 진술에 편파적 심증을 두고 작성
(정황근거, 증인, 증거 등)
청각장애인이 받은 3시간의 구금상태나 입장 무시)
결과: 쌍방(동등) 과실, 벌금형50만원
지방법원 판결: 폭력전과, 벌금, 치료비 부담
항소 필요(억울), 거주 지방외 지역 고등법원, 생업유지 등으로 - 포기

2) 날치기 및 폭력

- 24세, 남, K
장소: 버스 하차, 골목길, 여 핸드백 날치기 및 폭력
진행: 경찰, 검찰조사, 법원(정황으로만 판단)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약식 재판)

4) 기타: 날치기(은행 오토바이 - 3인조)

뇌성마비장애인의 형사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 몇 가지

발제자 : 김주연 violept@jinbo.net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기획부장

1. 들어가며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나 그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장애인들이 겪어야 하는 불합리한 처우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다른 부분에서 겪어야 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각 개인들의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특히나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불편의 종류나 정도가 위낙에 다양하여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 또한 다각도로 고민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형사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다.

참고로 범죄로 인한 형사관계의 사건에 대한 마땅한 상담사례가 없어 주로 집회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법·합법 연행과 그로 인한 조사과정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2. 뇌성마비장애인의 형사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차별 사례

1) 사례1

뇌병변장애 1급인 A씨는 팔다리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다. 그는 장애인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되었는데, 경찰서 형사계가 2층인데,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조사를 받으려 가려면 짐짝 들리듯 들려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인격적 모독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약 1시간의 실랑이를 벌인 끝에 관련 형사가 1층으로 내려와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경찰서에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지 않는 현관을 나와 다른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2) 사례2

뇌병변·언어장애 2급인 필자는 전신에 경증 경직형 장애와 심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 필자도 장애인관련 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필자의 경우는 사례 1과는 또 다른 경험을 겪어야 했다. 필자는 당시에 모 장애관련 잡지 기자자격으로 집회현장을 취재하였고 연행 과정에서 경찰의 명백한 불법연행임을 연행되어있던 기대마(전경버스)에서부터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필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 때문인지 어느 누구도 필자의 항의에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서에까지 가게 되었고, 같이 연행된 사람들의 조사가 끝나고 맨 나중이 되어서야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담당형사가 인적사항을 물었고 필자는 대답했지만 몇 차례씩 반복했지만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결국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했다.(참고로 필자는 지문날인 및 불심검문 등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증도 제시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도 몇 번씩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다. 그런데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조서를 모두 작성한 후 필자에게 주며 지문을 찍으라고 했다. 지문은 둘째 치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필자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질문 내용에 내가 대답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답변이 있고, 심지어는 묻지 않은 내용에 임의로 답을 해 놓은 것도 있었다. 아마도 종종 뇌성

마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하듯 필자를 정신지체인, 혹은 글을 모르는 문맹인으로 알고, 당시 경찰의 타겟이 되었던 한 활동가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허위조서를 작성하려 한 듯 했다. 필자는 또 다시 형사의 그러한 태도에 항의하였고, 조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여전히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결국에는 필자의 손으로 직접 조서를 작성하는 해프닝을 벌여야 했다. (이 사건에서는 이것 외에도 미란다고지 불이행에 대한 거짓증언 요구, 묵비권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협박행위 등의 일반적인 수사상의 불합리한 처우들도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장애로 인한 것에 한정시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3. 사례를 통한 분석

사례 1과 사례 2는 같은 뇌성마비장애인이고, 같은 이유로 같은 형식의 조사를 받는 과정이었음에도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시점과 그 내용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1) 사례 1의 경우

사례 1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물리적인 편의시설의 문제이다. 경찰서는 관공서이고, 경찰이나 범죄자 이외에도 신고 및 민원인 등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물리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수사과정보다는 시설이용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하지만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경찰은 서예 물리적인 편의시설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활동보조인이나 그 외의 장애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제공하여야 한다. 범죄의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를 조항으로 정리해 본다면 '형사상 조사시 피의자가 장애인일 때, 가능한 한 피의자가 요구하는 장애로 인해 필요한 모든 배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수사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 기기 등을 요구할 때에는 별도의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는 이후에 이야기할 의사소통보조와 관련하여 세부 항목이나 시행세칙으로 세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례 2의 경우

사례 2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형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라 할 수 있다. 농아인의 경우에는 수화라는 별도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수화통역(물론 법률용어의 부족 등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을 의뢰하거나 필담(이것도 청각장애인의 경우 단어 조합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오해가 생기는 수가 많아 문제가 있다)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뇌성마비장애인의 언어장애는 기호화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지 못한 발음이나 음성의 패턴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의 언어통역으로는 맞지 않다.

4. 뇌성마비장애인의 형사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한 제언

뇌성마비장애인의 언어장애에 대한 보조의 개념이 생겨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개념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현재 우리 단체에서 이에 대한 두가지의 개념으로 종종 논쟁이 불곤 한다. 하나는 '언어통역' 개념이고, 하나는 '의사소통보조'의 개념이다. '언어통역'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성마비장애인의 언어장애를 대체하는 또 다른 언어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도 그들에게 우리의 언어를 이해시켜야 하는 것인데, 발음이나 음성의 패턴을 잡아내면 된다고는 하지만 뇌성마비장애인의 개개인별 언어특성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훈련과정을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수화통역사처럼 전문적인 통역자가 있어서 처음 대하는 중증뇌성마비장애인의 언어를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뇌성마비장애로 인한 언어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을성과 관심 등의 주관적인 잣대가 필요한 것이고, 이는 개인간의 끊임없는 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말이다.

1) '의사소통보조'의 개념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의사소통보조'의 개념이다. 이는 자립생활에서 이야기하는 활동보조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설명하자면, 어떠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함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것이 그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대해 온 주변사람이라는 것이다. 특히나 의사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이나 함께 생활해 온 친구 등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보조에 있어서도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2) 전문위원회

그런데, 이를 수사과정에서의 의사소통보조로 이야기하자면, 문제는 조금 복잡해진다. 앞의 '언어통역'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객관적인 전문성이 확보되어 수사내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러한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의사소통보조'의 개념은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 배석할 수 있는 사람이 현행법에서처럼 직계가족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화 '오아시스'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직계가족조차 수사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전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피의 당사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의사소통보조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지정한 사람이 수사내용 자체와 연관이 되어있어 이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전문위원회에 지정인의 의사소통보조인으로서의 적합성을 자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3) '의사소통보조기기'의 제공

또한 마땅히 의사소통을 보조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 필담이나 타이핑 가능 여부에 따라 사람이 아닌 '의사소통보조기기'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의사소통보조기기는 개인의 언어장애 패턴이나 정도에 따라 노트북컴퓨터 등의 문자표현 가능기기나 음성을 보조하는 기기 등이 선택될 수 있다.

4) 수사관 교육

수사관의 장애인에 대한 몫이해는 비단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외형적인 특성 때문에, 또 뇌성마비라는 장애명 때문에 흔히 생기는 오해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의 필자의 예의 경우 필자가 진술내용을 일일이 검토해 보지 않고 지문을 찍었더라면 필자나 같이 시위를 진행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했을지 모르는 일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에 장애인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을 필히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형사소송법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교육과정에 이를 필수로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적용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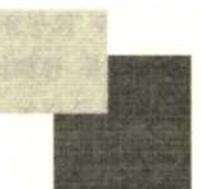
3. 글을 닫으며

급하게 사례발표를 준비하다보니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원고를 작성한 것 같다. 이후 시간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례조사와 깊은 고민으로 형사소송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해보며 글을 마친다.

형사절차상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고영신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소속)



1. 들어가며(제안이유)

- 왜 형사절차상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야기 하는가

가.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며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인권의 근원적 기초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¹⁾

우리 헌법 전문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을 선언하고 있고, 이러한 견지에서 헌법 제11조에서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²⁾ 이러한 평등의 원칙 또한 기본권보장의 기능과 방법에 관한 최고의 헌법원리이고, 공동체생활관계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사유로 써도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객관적 법질서로서 헌법해석과 모든 국가작용의 지침과 기준이 됩니다.

위와 같이 헌법 제10조, 헌법 전문 및 헌법 제11조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제 생활에 있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깊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밝혀지고 있는 일련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우리 사회는 국가 공권력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진술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하여 훌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적어도 진술권을 보장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서 말하는 평등이라 함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는 ‘상대적 평등이론’을 기계적 적용으로 적용할 경우 장애인에게는 합리적 차별의 준거가 되는 ‘능력’ 그 자체에 핸디캡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영원한 불평등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11조에서 도출되는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필요(needs)’에 따른 평등을 포함하는 “정의적 평등”으로 해석하여 이를 현실에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간에도 장애의 특성이나 그 정도가 각각 다르므로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점에서 기인하는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는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실정법의 내용은 많은 부분 합리성

1) 국제인권규약 또한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을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국제인권규약(B규약) 또한 제26조에서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을 상실하고 있고, 특히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재판의 과정은 인신구속이나 구금이 수반되는 절차의 특성상 다른 부분에 비하여장애인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의 정도가 높았던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다. 따라서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재판의 과정상에서 자행되는 장애인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 인권의 보호 및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하는 시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현행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개정제안의 내용

가. 보조인의 범위 확대

(1) 보조인 제도의 의의

보조인(輔助人)이라 함은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情誼)³⁾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補助者)를 말합니다.⁴⁾ 보조인은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의 발현으로 자진하여 되는 것으로서 법률 전문가가 법률적 측면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변호인과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보조인 제도는 변호인제도를 보충하려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으로 최근 변호사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⁵⁾

그러나, 보조인은 ① 변호인과 같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서면으로 신고만 하면 될 수 있고,⁶⁾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③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하는 수사단계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수사 및 형사소송단계에서 진술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정신지체장애인 등의 인권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보조인 범위의 확대필요성

- 현행 형사소송법상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29조 제1항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정의 사람에 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446 판결 참조). 이러한 보조인 자격의 제한은 삼례사건의 경우⁷⁾처럼 부모에게도 정신장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열거된 도움을 줄 만한 가족

3) 서로 사귀어 친하여진 정(국어사전).

4)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p. 140.

5) 주석 형사소송법, p. 124;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p. 140.

6)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7) 삼례 할머니 3인조 강도사건 - 1999년 삼례에서 3인조 강도에 의해 할머니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 근처에 살고 있던 정신지체 3급의 최씨(장애인등록증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신지체5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와 역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그의 친구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결국 자백을 하였고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어느 것 하나 사건정황과 일치하지 않았다. 최씨의 경우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정신지체를 갖고 있어서 아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달리 도움을 받을 만한 친척도 없었다. 교도소 안에서 상담활동을 하던 교회의 상담자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 재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 부산에서 진범으로 추정되는 세 사람이 잡히게 되었다. 피해자 가족의 진술대로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고 사건에 대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제29조(보조인)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및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법원은 형법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고인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장애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보조인 제도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9조(보조인)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및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11조(보조인의 신고 등) ① 생략 ② 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있다. ③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과거에 담당했던 교사, 현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시·군·구(자치구에 한함)의 담당 장애인복지상담원 등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 관련 전문가 ④ 법 제29조 제4항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원이 제29조 제4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야 한다.

한 진술내용도 정확하게 일치했다.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진범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조차 최군과 그의 친구들이 범인일 리가 없다며 재수사를 원했다. 그러나 재심청구는 '전주지방검찰청이 피고인 최씨가 진범이라고 주장한 배씨 등 세 사람에 대하여 이들이 진범인지 여부를 내사하였으나 '혐의없음'(이는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소할 만큼 증거가 없을 경우에 검찰이 내리는 결정임)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기초와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법원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이를 거부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후 피고인들은 재심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더 이상의 상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더 이상 유죄판결을 다투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 결국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형을 다 살고 만기출소하였다.

도 마땅히 없는 때 수사절차상 진술보조가 반드시 필요하였음에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자백을 유죄입증의 결정적 단서로 보고 있는 현 수사관행 하에서는 판단능력이나 진술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의자나 어느 정도 판단능력 또는 진술능력은 있으나 수사하는 입장에서 그 진술을 알아듣기 힘든 장애인 피의자의 경우 자백을 강요당하기 쉽고 또 이러한 피의자들은 강요에 의해 쉽게 자백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완전한 판단능력을 가진 보조인에 의한 장애인 피의자의 진술보조가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조인의 자격범위를 친족과 호주에 제한하고 있어 그러한 범위 내에 보조인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 피의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일정 범위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수사절차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위와 같이 보조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보조인의 자격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함) 제22조의 2는 피해자가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的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성폭법과 같이 보조인의 자격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폭법이 위와 같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的 동석을 허용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이므로⁸⁾ 형사절차상 진술보조의 측면에서 보조인 범위확대를 추진하는 본 형사소송법 개정논의와는 약간 그 취지가 다른 듯 보입니다. 더군다나 장애인은 대부분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장애인 각각이 가진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보조인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마저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법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자”까지 보조인의 범위를 확대하되,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형사소송규칙 개정제안 제11조 제2항 참조). 아울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실제로는 의사능력이 없으면서도) 외형상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이나 의사능력은 있으나 자신의 의사로 전달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처럼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장애인의 정의

우리나라의 현행 법 중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정의를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1999. 1.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 3. 주요골자 증 가.항]. 장애인복지법이 제2조 제1항에서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해 놓고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이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확충과 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국가예산이나 행정의 계약상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보호는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와 그 내용을 달리하므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도 모든 장애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여야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보조인 선정의 고지의무

변호인 제도의 확립으로 보조인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상실되어 실제로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조인 제도를 활용하는 예는 드물고, 보조인 제도의 존재를 아는 사람 또한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인 제도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수사절차 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조인 제도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여 그 운용의 실효성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국선변호인 제도의 보완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제안
제33조(국선변호인)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5. 생략.	제33조(국선변호인) ① 현행 규정 내용 ② 법원은 제29조 제4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직권 또는 보조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보조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보조인이 있더라도 추가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1항의 선정사유의 범위를 간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형사재판단계에서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보조인도 국선변호인선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 보조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보조에 그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법률적 측면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변호인과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변호인 또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각각이 가진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보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와 보조인 제도를 함께 규정하더라도 양 제도 간의 마찰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03. 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다. 재판서 등의 작성 등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① 현행 규정 내용 ②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제1항의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점자 또는 플로피디스켓의 형태로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 ①~⑥ 생략.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 ①~⑥ 생략. ⑦ 피고인, 피의자, 증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나 플로피디스켓 형태로 된 조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7항
제181조 (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1조(장애인의 통역) 법원은 장애인의 진술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③ 생략.	제244조 ① 생략. ② 피의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전항의 조서를 점자 또는 플로피디스켓 형태로 도 작성하여야 한다. ③, ④ 현행 제2항,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장 통역과 번역" 신설	
제91조(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의 범위)	
가. 피고인이 직접 진술을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	
나. 진술능력은 있으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다. 기타 관련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또는 재판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하고 진술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사관 등이 진술자가 시각장애인 또는 문맹자이거나 조사시간이 촉박하는 이유 등을 내세워 진술자에게 조서내용을 개략적으로 읽어주고 서명날인(무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사관 등은 진술의 요지만을 간략히 전달하거나 범죄사실에 끼워 맞춘 자백내용을 진술자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라는 이유로 강변하여 진술자의 진의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서는 진술자가 직접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시각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배려

조서나 재판서 등 관련 서류가 한글로만 작성되는 관계로 시각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열람할 수 없어 부득이 수사관이나 보조인이 진술내용을 읽어주어 내용의 정확여부를 확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시각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나 재판서 등 관련 서류는 시각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도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인 점자나 플로피디스켓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 전체 시각장애인의 15%에 미치지 못하고 점자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양이 많아지므로 점자 이외에 플로피디스켓 형태로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시각장애인은 음성지원시스템을 갖춘 컴퓨터를 활용하여 진술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내용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에 음성지원시스템을 갖춘 컴퓨터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의 범위 확대

현행 형사소송법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에 한해서만 통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이외에도 진술능력은 어느 정도 있으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등의 경우에도 통역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통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법원이 법률 용어의 개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통역인'을 위촉하여 수화의 통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서의 작성방법의 제안

판단능력과 진술능력은 있으나 진술방법에 제약을 가진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예를 들어,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이 워드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쌍방향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사관이 질문을 작성하면 그에 대하여 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답변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권을 보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의 마련

- 장애인의 경우에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일반선언규정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정제안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장애인이나 아동 등에 대한 인권보호가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선언규정을 넘어서서 수사기관에게 구체적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잘못된 현실 개선을 위한 실천을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시각장애인 피의자나 피해자의 경우 공간적 상황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피의자나 피해자가 심리적 위축감을 감소시키고 최선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현장(경찰서 내부)의 공간적 상황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수사자의 인적사항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장애인 보호의무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피의자에게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그러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전문위원회의 설치 추진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제198조(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98조(주의사항) ① 현행 규정 내용 ②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아동, 청소년 노령 등에 의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또는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수사하는 경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3조의 신설 ①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가 정신지체장애인, 아동, 노인으로서 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피의자를 대변할 수 있는 보조인을 두어야 한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가 장애인으로서 수사상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장애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과연 어떠한 특성이 장애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학계, 학계,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또는 법무부나 대법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전문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개정제안에 규정된 “관련 전문가”는 전문위원회로 대체되고, 상대적으로 보조인 제도의 운용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이나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장애인차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시적이거나 대법원규칙에 이를 삽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독일의 경우 이미 장애인평등법에 의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형사절차상 장애로 인한 차별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대법원이나 법무부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문위원회 설치를 하고 그 위원회가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에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 형사소송법 제26조에 대한 재고

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고 규정하여 의사무능력자에게 소송행위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능력은 소송능력(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의사능력 없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이나 그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수사실무상 형사소송법 제26조에 따른 법정대리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2(전문가의 의견조회)⁹⁾와 같은 규정을 형사소송규칙에 두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등 의사무능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대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결론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의 원칙은 인간의 결정의 자유를 논리적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행위할 능력, 즉 결정의 자유를 가진 자에 한해서만 위법한 행위를 한 데 대하여 비난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수사제도와 사법제도는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행위능력(책임능력)에 대한 고려가 아직은 미흡한 듯 합니다. 더욱이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행위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책임의 원칙에 의한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장애인은 대부분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장애인 각각이 가진 장애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형벌권은 국가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이므로 엄격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는 장애인 각각의 특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의 정확성 보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형사절차상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꾀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제안은 현행 불합리한 수사관행과 및 형사재판절차의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실질적 평등, 정의적 평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범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장애인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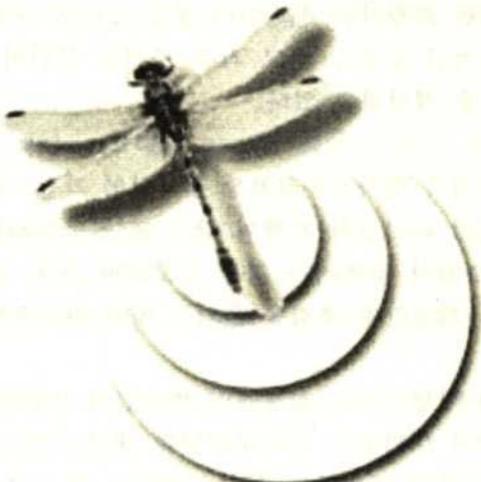
9) ① 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료소견 및 가정폭력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토론 발제문

1. 피의자신문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구조 p.30
김형태(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법무법인 덕수)
2. 수선, 장애유형별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p.32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3. 법개정과 함께 실태파악, 전담기구 구성, 장애인권교육 실시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p.34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

<볼수> 형사절차상 장애인 신권침해 사례 p.38



피의자신문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구조

변호사 김영태

(천주교인권위원회, 법무법인 덕수)

1. 피고인의 지위.

가. 과거 규문주의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오로지 수사와 재판의 대상, 객체로만 취급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진술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적법절차 (Due process of law) 개념이 도입되면서 피고인은 수사, 재판의 객체가 아니라 소송법상 검사와 동일한 지위의 다른쪽 당사자로 취급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헌법차원에서 보장되었다.

나. 현행 형사소송 구조상 피고인은

- ① 소송의 주체로서 각종 신청, 주장, 입장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 ② 증거방법으로서 피고인의 임의 진술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며
- ③ 절차의 대상으로서 소환,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 처분의 대상이 되는 등 세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아직도 피고인을 단순히 잠재적 범인으로 취급하여 과거 규문주의 시대처럼 수사와 재판의 대상, 객체로 취급하고 있다.

수사관, 검사, 법관은 물론 일반사회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적법절차나 당사자 대등주의 같은 피고인의 인권보호 시스템 보다 당연히 우선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장애인 피의자, 피고인의 문제

가. 형사 절차의 현실을 볼 때 장애인은 피고인의 세 가지 지위 모두에서 열악한 처지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이 주로 소송의 주체로서 각종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 보조인이나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각종 조서를 본인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나 플로피 디스크 형태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상 장애인의 가장 커다란 위험은 수사와 재판에서 객체로 취급받으면서 증거방법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이 강요 또는 유도되는 데에 있다. 장애인의 허위자백을 토대로 다른 증거들이 억지로 꿰어 맞춰지는 것을 막으려면 초동 진술단계에서부터 외부의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정안의 초점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그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넣는 것이다. 최근 송두율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접견·교통권)을 유추적용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렇게 해석하는 것은 인신구속과 처벌에 관하여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한 헌법의 정신에는 부합한다"고 확인하였다. (대법원 2003. 11. 11. 2003 고 402 결정)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위 권리가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과 더불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핵심적인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 만일 위 권리에 대한 제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추상적인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 등을 들어 수사기관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법령에 의한 제한 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 기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기왕의 변호인관의 접견·교통권의 행사를 통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수사기밀의 누설 우려는 상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제한 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조작된 증거의 사용이나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피의자신문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또는 신문참여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 등을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범의 도주를 도운 사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허용할 경우 향후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라고 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도신문이나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보호의 핵심이다.

3. 대안

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을 확실하게 명문으로 보장받는 것이 장애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기존 법무부안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시 참여권에 대해 과다하거나 추상적인 제한을 하지 않도록 변협, 민변등 법률가 단체 및 일반 인권단체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

나. 개정안이 제안한 보조인 범위확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보조인은 ① 수사초기단계에서 적극 개입하여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 ②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을 끌어내고 감시하는 정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현행 형소법 제33조도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제33조 제2항 추가는 불필요하다.

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사건에 대한 구조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제일 요긴하다. 국선이건 사선이건 변호사의 형식적 변론 때문에 사건이 왜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장애인 단체 등에서 장애인 사건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두고, 구체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가족들이나 보조인으로부터 즉시 사건을 접수받아 초기부터 간여토록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을듯하다.

이 변호인단이 각 법원의 국선변호인 명부에 등록을 하고 장애인 사건의 경우 법원과의 협조를 통해 이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우선, 장애유형별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발제자 :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일을 한지 4년째이다. '성폭력상담소'라는 전문용어가 붙어진 상담소이지만 그동안 성폭력상담 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정폭력 상담과 일반상담이 같이 이루어져 왔다.

그 기간을 통하여 일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이번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형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한 이 자리에서 본인이 절실히 생각하는 것이 '장애유형별에 대한 접근'이라는 것이다 <표1 참고>¹⁰⁾.

상담소에서는 불가피하게 여러 유형의 여성장애인이 피해를 당하고 상담을 해오는 것을 접하며 각 장애유형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이 어려운 청각장애인과 상담을 하는 것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과 상담을 하는 것과, 시각장애인을..... 상담하는 것은 각기 다른 접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과 차이를 깊이 들여다보고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형소법개정안'이 마련,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표1> 성폭력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

<단위 : 건(%)>

상담소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	중복장애	비장애	계
서울	6 (6.9)	8 (9.2)	3 (3.5)	6 (6.9)	48 (55.1)	1 (1.2)	7 (8.0)	5 (5.7)	3 (3.5)	87 (100.0)

<표2> 피해여성장애인의 학력분포

<단위 : 건(%)>

상담소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이상	미상	계
서울	23 (26.4)	6 (6.9)	24 (27.6)	25 (28.7)	6 (6.9)	3 (3.5)	87 (100.0)

10)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02년도 상담분석 자료

<표3>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 : 건(%)>

상담소	자원봉사	근친	친인척	동급생선후배	이웃	교사강사	목사동(성직자)	모르는사람	직장	기타	계
서울	5 (5.7)	10 (11.5)	2 (2.3)	6 (6.9)	25 (28.7)	6 (6.9)	2 (2.3)	22 (25.3)	3 (3.5)	6 (6.9)	87 (100.0)

* 직장은 직장동료 및 상사를 모두 의미함.

<표 4> 고소·고발 여부

<단위 : 건(%)>

상담소	고소·고발 여부	실사례
서울	41 (47.1)	87 (100.0)

위의 표들은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상담의 실제에서 있었던 것으로 장애 유형별로 접근해야 함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교육정도, 성별, 연령이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

<표 5>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비교

<단위 : %>

구 분	장애인		일반인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초등이하	67.8	41.4	35.0	17.8
중학교	11.1	16.1	17.1	14.2
고등학교	15.3	29.5	34.8	41.4
대학이상	4.2	11.2	13.1	26.6
비해당	1.6	1.7	-	-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 장애인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에 있어서 확실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개정과 함께 실태파악, 전담기구 구성, 장애인권교육 실시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박숙경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

들어가며

우선 수사과정을 포함한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고영신변호사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와 함께 형소법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의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한다.

1. 형소법개정을 통한 형사절차상 장애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발제자가 지적한대로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재판의 과정은 인신구속이나 구금이 수반되는 절차의 특성상 다른 부분에 비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침해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다음의 보도내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권위는 2002년 9월 20일 전북전주시 금암2파출소에서 일어난 경찰관 피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얻기 위해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조아무개(22)씨 등 3명의 유치장 수용기록, 신체검사기록, 변호접견내용과 본인·경찰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조씨들은 절도협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지난 1월 16~20일 수사본부의 조사과정에서 적절한 휴식없이 밤시간대에 집중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조씨가 정신지체 등으로 군면제판 사파정에서 적절한 휴식없이 밤시간대에 집중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조씨가 정신지체 등으로 군면제판 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경찰이 밤샘조사를 하면서 발바닥과 뺨 등을 때리는 등 피의자들을 압박해 “근무중인 경찰관을 죽이고 권총 1정을 훔쳤다”는 혐의자백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이 조씨에게 자백을 하지 않으면 전기고문을 하겠다. 물어버리겠다”고 협박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구둣발로 밟거나 “살인죄를 뒤집어쓸래, 아니면 총기질 도죄만 뒤집어쓸래”라며 자백을 유도한 정황을 잡아냈다... (이하 생략)

- 2003년 한겨레신문 -

많이 알려진 삼례사건의 경우나 속초 암매장 사건 등에서도 비슷하게 진술능력이 약한 정신지체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협박이나 가혹행위 등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심각한 경우 살인죄라는 중죄를 뒤집어쓰기도 한다. 마치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와 같은 상황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수사절차상의 인권침해문제는 그동안 장애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관심 밖의 문제였다. 즉 일상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인식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연구소 인권센터가 문을 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지체장애 혹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수사과정에서 무리한 강압수사를 받아 혐의를 뒤집어쓰거나 간혹은 경찰관으로부터 무시와 폭행을 당하거나 구금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해왔다. (첨부된 피해사례 참조) 비록 드러난 사례가 많지는 않아도 동 사건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상황이 비슷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의 저조함은 예외적 상황이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미치기 어려운 폐쇄적인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접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수사과정의 부당성 등을 따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담당경찰관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첫째,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약방문 일 수밖에 없다는 점.
둘째, 개별 사건에 대해 대처한다는 것이 피해자와 민간단체 모두에게 쉽지 않으며 상당한 역량을 필요로 하고 무엇보다 대처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실제 일반 시민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르므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형사절차상 장애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점.

그러므로 개별적 대응이 아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 또는 피의자 신분, 장애유형, 범죄의 유형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장애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3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구모임”¹¹⁾을 꾸려 국내관련 판례와 외국입법례, 피해사례 등을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2.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배치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형사절차상 장애로 인한 인권침해는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간간히 인권단체나 장애관련 단체 등을 통해 드러난 사례와 공식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는 정부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형사절차에서 당하는 어려움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인권보호”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나 법무부와 경찰청 어느 곳 하나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장애인 문제를 전담하는 직원한명이 없다. 심지어는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어 수사관들에 대한 장애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모 경찰청을 방문하였더니 장애인주차장에 경찰임원차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휠체어를 탄 사람을 위한 어떠한 배려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이 이루어지던 3일 내내 벌어지고 있었다. 형사절차상 왜 장애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 검찰, 경찰, 대법원 등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기구에 장애인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전문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장애문제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법무부 차원에서 형사절차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와 인권침해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

11) 태원우변호사(법무법인 백상), 고영신변호사(법무법인 충정), 김좌진변호사(오성합동법률사무소), 이정우변호사, 소라미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소송센터 ‘공감’), 34기 사법연수생(사회보장법학회), 김정열(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박숙경(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 김정하(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등

한 실태파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전문위원회 설치, 전담인력 배치, 장애인권교육 실시 등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무부에서 지난해 12월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인권보호수사준칙」 제8조【장애인, 청소년의 보호】에서 “검사는 심신 장애인 또는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보호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6조【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서는 “진술인의 연령이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술하는 내용을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술인이 연소자이거나 심신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이나 친족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한다.”고 하여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보조인선정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동 준칙은 법적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검사가 관여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수사과정에 대한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일선 경찰관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하여 이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명령이나 규칙 또는 지침 등을 통해 담아내야 하며 ‘장애인권교육’¹²⁾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맺으며

1991년 12월 17일 UN 총회 결의안으로 채택된 [The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CG] 제1원칙 제7항은 “법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재판정이 정신장애인(a person of mental illness)이 자신의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0원칙 제1항에서는 “본 원칙들은 형사처벌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심리질차나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정신장애인임이 판명된 사람 또는 그러한 정신 질환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개 형사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¹³⁾가 많다. 또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범주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위의 유엔원칙에서 “정신질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포함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절차상 장애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소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전

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상호보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에 앞서 법무부에서 「형소법개정」을 통해 장애로 인한 인권침해를 줄여나가는 시위를 당기길 바란다.

12)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에 장애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3) 예를 들어 경계급 정신지체인, 학습장애, 인격장애 등

< 불임 >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1】

수사기관의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침해사례

정신지체 3급이면서 자폐성향을 보이는 18세의 고등학생인 홍군은 수업시간중 학교근처를 배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2002년 11월 수업시간중 학교근처의 교회를 배회하다가 관리인에게 발견돼 파출소로 현장연행되었다. 관리인은 예전에도 교회에서 자판기 돈이나 성경책이 없어진 일이 있었다고 귀뜸했고 이에 경찰은 조사과정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홍군을 추궁하였다. 미성년자인 홍군은 교복을 입고 있었으며 ‘자폐성향’이 있던 터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장애’가 있음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지만, 조사를 마칠 때까지 보호자나 학교로 연락이 가지 않았다. 겁을 먹은 홍군은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야 연락을 받은 홍군의 어머님이 검찰로 찾아갔지만 검사는 어머님을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현장범이 아닌 상황에서의 현장체포, 여죄추궁,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 경찰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과정과 이를 토대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어머님은 ‘인권센터’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으며 결국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였다. 홍군의 어머님은 아무런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정신지체를 가진 미성년자의 자백만으로 ‘유죄판결’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야 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2】

“무리한 여죄추궁과 장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H씨에 대한 수사상 인권침해”

성남 중부경찰서 강력계에 근무하는 김경사, 오경장, 최경장은 2001. 2. 21. 오전11: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던 한씨(23세, 남, 정신지체 2급)에게 다가가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무슨 의미인 줄 몰라 ‘네, 네’라고만 대답하던 한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고 진술서를 쓰게 한 후, 당일 현장검증 및 범행재연을 실시하고 하루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가둔 후 2001. 2. 22. 20:30경에 석방했다. 그 후 검찰에 송치됐으나 2001. 5.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검찰수사기록 중 의견서에 따르면, 1차례의 가정집과 4차례의 지하철 등 총 5차례의 절도행위를 저질렀다고 되어있었으나, 피해자로 유일하게 지목된 사람은 절도신고를 한 적도 없으며, 3만원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창문으로 넘어왔다고 하지만 창은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창문으로 침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술을 경찰에 했다. 그러나 의외로 경찰로부터 ‘위증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등 오히려 협박을 받아 도난부인의 진술을 묵살 당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후에 인권센터에서 수사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경찰의 조사내용 중에는 피의자가 행했다고 하는 5번째 범행일시는 2001년 2월 21일 오전 11시경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시간은 피의자가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던 시간이었다. 이렇듯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단순히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인정해버린 것이다.

경찰서 인치 후 10시간 후에 집으로 연락이 와 부모님이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진단서를 보여주며 다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인감증명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97년 진단서는 볼 것도 없다”면서 밀쳐내며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들이 다음 날 서울대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려 했으나, 원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또 다시 거부하였다. 형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정말 정신지체 장애인인줄 몰랐다. 장애인을 왜 함부로 밖으로 내보내는가, 그리고 등록등은 왜 소지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목걸이 같은 표식이라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등등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은 본인의 자백을 받았고 경찰서에 와서도 자기가 알아서 진술서를 쓰길래, 정말 범인인줄 알았다고 말하며 그래서 불구하고 상황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씨는 자폐성향을 보이고 있어 외형상으로 ‘장애’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누구나 5분 정도만 이야기하면 말을 자꾸 되풀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등 즉시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

고 있다.

인권센터는 한씨의 부모님과 상의하여 형사 3인을 상대로 경찰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의 전말을 재조사하여 징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조사를 했던 담당관이 과정에서의 무리한 수사와 수사원칙에 어긋난 관행 등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올려 해당 경찰서에 세사람의 수사관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징계를 내리는 주체는 해당 경찰서였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고 경찰서는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게다가 결국 형사들이 소청심사를 제기해 ‘견책’ 마저도 취소되었다. 결과적으로 형사들이 받은 처벌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인권센터와 한씨의 부모님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국가와 형사 3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와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수사과정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용, 병원 이용비, 심리적 불안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막중했다. 심지어 한씨의 아버지는 이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가족들이 이문제로 인해 겪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 결국 중간에 소취하기 이루어지며 어렵게 끝났다.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3】

가족 모두 정신지체인, 아무런 지지체계가 없어 더욱 심각 (삼례 할머니 3인조 강도사건과 여수 개도둑 사건)

가족 모두가 정신지체를 갖고 있어 형사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줄만한 사람이 없다면 고스란히 가해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인권센터에 직접 의뢰되었던 것은 개도둑으로 몰린(2002. 12.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아들이 정신지체인이고 형, 아버지 등 일가족 모두가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경우였다.

2002년 12월, 쌍둥이 안군형제(형제모두 정신지체, 17세)는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 개농장을 지나다가 묶여있는 개가 귀엽다며 만졌고, 이를 본 주인은 개도둑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형제중 동생을 잡아 폭력을 휘둘러 턱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을 본 아버지 안씨(정신지체 2급, 49)는 농장주인을 고발하려고 파출소에 갔는데 오히려 안군형제들이 절도미수로 긴급체포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더욱이 문제는 안군형제중 형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머리를 박게 하고 폭격자세의 기합을 주고 욥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경우는 이웃인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던 터라 다행히 사회적으로 문제화될 수 있었다. 안씨가족을 돌보고 있는 조목사는 이들이 과거에도 파출소에서 벌을 받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며, 경찰들은 이들에 대해 기본적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이웃이 이러한 구체적 문제에 도움을 주고 개입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수사관들도 ‘객관적’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장애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2000년도에 있었던 ‘삼례 할머니 살인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 사건은 인권센터에서 직접 상담한 사건은 아니며 언론(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되면서 접하게 되었다. 1999년 삼례에서 3인조 강도에 의해 할머니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 근처에 살고 있던 정신지체 3급의 최씨(장애인등록증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신지체5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와 역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그의 친구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결국 자백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어느 것 하나 사건정황과 일치하지 않았다. 최씨의 경우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정신지체를 갖고 있어서 아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시골이라 어느 누구나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교도소 안에서 상담활동을 하던 교회의 상담자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되어 재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 부산에서 진범으로 추정되는 세사람이 잡히게 되었다. 피해자 가족의 진술대로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고 사건에 대한 진술내용도 정확하게 일치했다.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진범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김형태변호사(천주교인권위)를 중심으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조차 최군과 그의 친구들이 범인일 리가 없다며 재수사를 원했다. 그러나 재심청구는 ‘전주지방검찰청이 피고인 최씨가 진범이라고 주장한 배씨 등 세사람에 대하여 이들이 진범인지 여부를 내사하였으나 ‘혐의없음’(이는 범죄

【영사소송법 공청회】

가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소할 만큼 증거가 없을 경우에 검찰이 내리는 결정임)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법원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이를 거부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후 피고인들은 재심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더 이상의 상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더 이상 유죄판결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 결국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형을 다 살고 만기출소하였다.

【사례4】

시각장애인,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수화통역지원 절실

수화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가끔 경찰서로 수화통역을 하러 나가곤 한다. 처음에는 한 경찰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수화통역을 해 준 적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속에서 알게되었는지 이제는 다른 경찰관에게서도 연락이 온다. 그러나 김씨는 수화통역을 나갈 때마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화통역사를 부르는 것에 대한 법의 규정이 없고 그저 통역인 만이 법률조항에 제시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경찰관들은 개인적으로 아는 수화하는 사람을 급한 대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법대출신이어서 다행히 법률용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통역이 가능했던 적도 많았다. 법률용어에 있는 단어들이 수화로는 단어자체가 없거나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작은 단어 하나 해석을 잘못했다가는 시각장애인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경찰서로 수화통역을 나갈 때마다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수화통역사의 배치가 시각장애인의 형사상의 문제와 직결됨을 알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고 가야했고, 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경찰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사례5】

시각장애인여성 성희롱 고소에 대한 무시

시각장애1급여성인 정씨(25세) 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다. 시각장애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무시와 희롱을 자주 당해오던 정씨는 지난 2003년 8월 80대 노인으로부터 지팡이로 찌르고 엉덩이를 맞는 등의 추행을 당해왔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정씨가 이전에 2차례의 '성희롱' 신고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에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 저 할아버지가 아가씨 엉덩이를 만졌겠느냐?"며 피해자의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매우 화가난 정씨는 인권센터로 상담을 의뢰했다. 인권센터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송파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송파경찰서는 청문감사를 통해 해당 경찰관과 지구대책임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경찰관은 '자신으로 인해 실시된 장애인권교육에 참석도 하지 않은 채 현재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 '을 제기한 상태다.

【사례6】

시각장애인, 대필 대독서비스 거부

지난 2001년 2월, 임씨(시각장애 1급, 52세)는 동업자와 다툼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임씨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할수 없으니 자신의 직원중 한명이 동석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조사과정에서 그럴수 없다며, 동석을 거절하였다. 할수 없이 조사를 끝낸 임씨에게 경찰은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를 낭독해 주었고, 낭독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임씨에게 확인도장을 찍기 위해 임씨의 손을 잡아 여러 차례의 도장을 찍었다. 조서의 내용도 경찰이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것도 경찰이고, 자신의 손을 잡아 어디에 도장을 찍는지 확인해 주지 않은채 그저 도장을 찍는 사람도 같은 경찰이었다. 이에 임씨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진술서를 확인할 수 없고, 자신의 도장을 어떻게 찍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 했지만 묵살되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인권 확보 공동 행동

주소: 137-843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

전화 : 02)521-5364

FAX : 02)584-7701